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대한 예비인증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 >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18호)

2024. 7.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재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5. 30.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의2에서는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현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한의학사 또는 간호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

음.

하지만 상위법인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등을 근거로 예비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의2(평가 등) ① (생략)                                                                                                                                                                           | 제11조의2(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を受け 받아야 한다. | ② -----<br>-----<br>-----<br>-----<br>-----<br>-----<br><u>. &lt;단서 삭제&gt;</u> 이 경우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근거로 예비인증을 할 수 있다. |
| <후단 신설><br><신설>                                                                                                                                                                               | ③ <u>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u>                                                                                       |

| 현행                                                                                       | 개정안                                                                  |
|------------------------------------------------------------------------------------------|----------------------------------------------------------------------|
| ③·④ (생략)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br>같음)                                            |
|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br>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br>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br>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br>령으로 정한다. | ⑥ -----인증·예<br>비인증, 제4항의-----<br>----제5항의 평가-----<br>-----<br>-----.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sup>1)</sup>에 따라 정부 인정을 득한 인정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이 중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의 경우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sup>2)</sup> 실제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 1)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 2)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못해 2018년 폐교하였고, 대원대학교 간호학과는 2023년 간호교육인증 평가 불인정 판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수시 입시 절차를 전면 중단한 바 있음.

이러한 인증제도의 일환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sup>3)</sup>

개정안은 운영 개시 예정인 의과대학에 대한 인증을 예비인증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교육부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규정하여 법령상 근거를 강화하려는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비인증’이라는 새로운 평가·인증 유형을 도입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3)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증’과 ‘예비인증’ 구분의 모호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제2항에 따르면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은 해당 인정기관이 정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정기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인증유형 중 특별히 ‘예비인증’만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개정 법률안에서 제시한 용어인 ‘예비인증’으로 변경하는 경우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받은 ‘인증’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받는 ‘인증’보다 수준이 낮거나 ‘인증 이전의 단계’라고 인식될 수 있어 수험생, 학부모 등에게 인증 정보에 대한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신설 학과 또한 신입생 모집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88 |